

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4. 5. 31(월)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5월 15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5월 15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9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4. 5. 29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- 이천시도자기명장으로선정된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이천시도자기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“시상금” 대신 “연구활동비”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7조제1항)
-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명장에 선정된 자도 연구활동비 지급(안 부칙 제2항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이천시도자기 명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시상금」을 「연구활동비」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함과 동시에 어떤 특정규정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입법기능상 경과조치보다 적용례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② 「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,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」</p>	<p>② 「(연구활동비지급에관한적용례)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한다」</p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일부수정의결(만장일치)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일자 및 제안자 : 2004. 5. 29.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외 6인

나. 수정이유 :
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자기 명장의 연구의욕 고취 및 전문분야 정진으로 도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,
- 부칙중 일부 조항이 법조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정

다. 수정주요골자

- 부칙 내용 중 법조문 형식에 맞추어 일부 수정(안 부칙 제2항)
 -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

8. 기타사항 : 없음

- ※ 첨부: 1.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2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연구활동비지급에관한적용례)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,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p>	<p>②(연구활동비지급에관한적용례)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한다.</p>